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4.(목) 석간 배포 2024. 7. 3.(수) 15:00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이하 동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24.2.1일자)" 참조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시)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 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 경험한 불법추심 종류 및 불법추심 이후 생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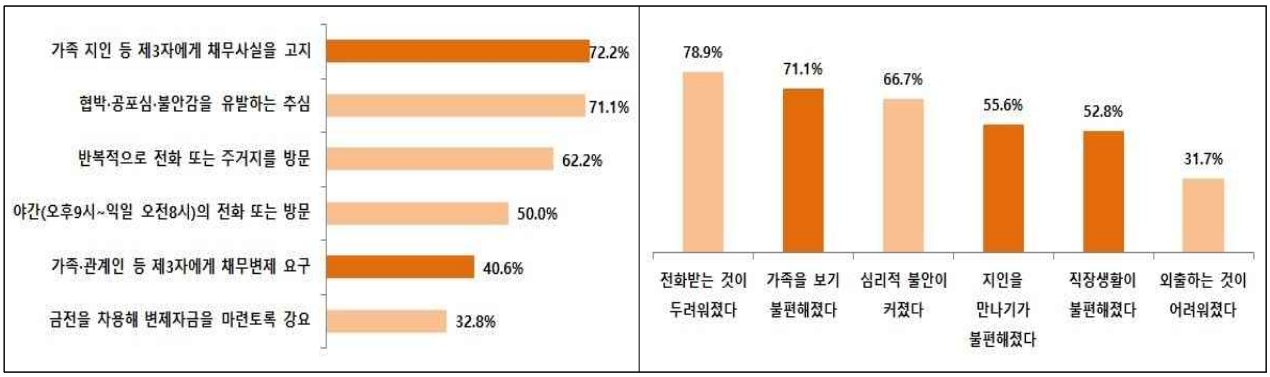

※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무료 법률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및 운영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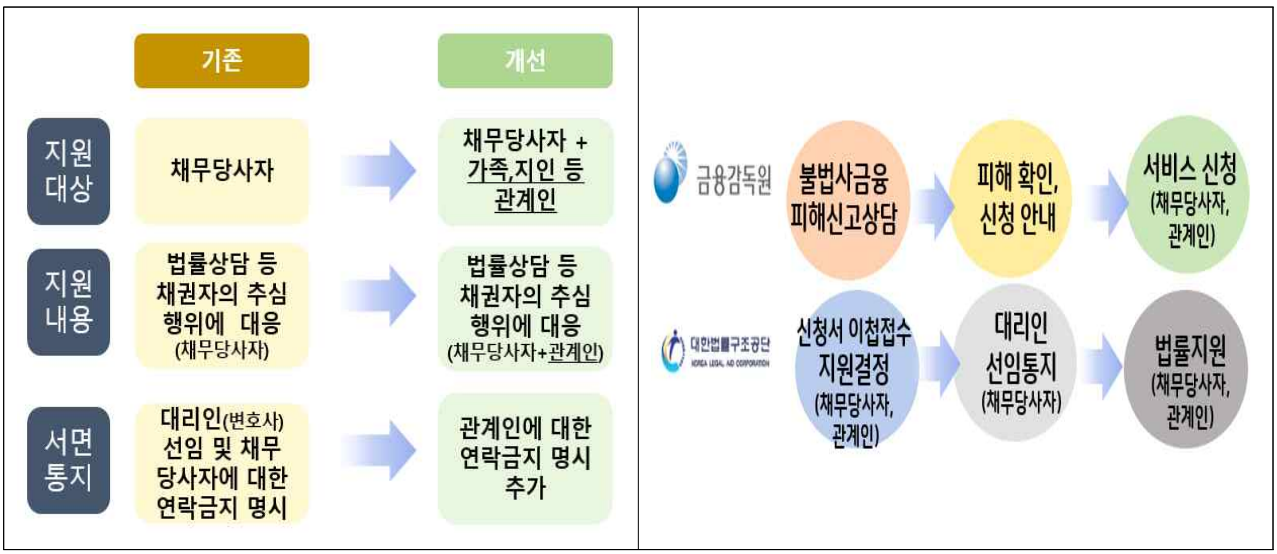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❶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❻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❷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❼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❸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❽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❹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❾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❺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❿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성종현 (02-2100-2511)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박재민 (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백영종 (054-810-1061)
		담당자	팀 장	조동규 (054-810-10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주요 질의 및 답변**

1.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인지?

□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 및 소송**을 진행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선정한 기준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에 따라,

○ **관계인**은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

3. 채무당사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관계인도 피해우려 만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서비스 **지원 가능**(채권추심법 제8조의3)

○ 다만, ①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②'**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4. 한정된 재원으로 관계인을 확대 지원할 경우 채무당사자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금년도 **사업 예산**(12.55억원), 채무자대리인 **이용 추세**(연평균 3천~4천건) 등을 감안 시, **예산 범위 내 관계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다만, 금년도 하반기 중 **사업 지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조정**해 나갈 예정임

5.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한 후 **관계인의 신청**이 가능

○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

참고2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불법추심 주요 사례(예시)

❶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A씨는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하며 상환 협박을 하였음

그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채무사실을 남편 B와 친정어머니 C에게까지 알렸음. 또한 A씨의 미성년 자녀 2명(D, E)에게도 채무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초과 이자를 요구하였음.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2명(D, E)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하였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채무당사자인 A씨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A씨의 가족인 B, C, D, E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가능

❷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F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였음. 고정 근무를 하지 못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여러 곳에 돈을 빌리게 되어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매월 상환금액이 커지면서 연체가 되었음. 이에 불법사금융업자는 F씨의 지인 G와 H에게 전화하여 연체 사실을 알리고,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지인 H으로부터 입금을 받기도 하였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F씨의 건강은 악화되고, 지인 G, H와도 사이가 멀어지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

⇒ 채무당사자인 F씨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지인 G, H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가능

❸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요구

· I씨는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낮은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인터넷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알게 되었으며, 1.5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7일 후인 1.12일에 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함. I씨는 선이자명목으로 30만원, 공증비용 3만원을 공제후 실수령은 57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개월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96만원을 상환(연 이자율 821%)하였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위 상환금액이 실제 대여한 금액을 초과함에도 연장이자만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관계를 종결해 줄 의사가 없었음.

금전 차용 당시 I씨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직장동료 J를 비롯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이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시달리다가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 채무당사자인 I씨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동료 J를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I씨의 채무와 관련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가능

참고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0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1332→3번) 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참고4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 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채무 당사자는 물론, **관계인**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을 **신청**하세요.

* 금감원(☎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등에 유포**(우려)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

참고5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안내자료(리플렛)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채무 당사자는 물론, **관계인**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이제 **채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도와드립니다

< 무료법률서비스 개선 전·후 >

	기존	개선
지원대상	채무당사자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지원내용	법률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채무당사자)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 (채무당사자+관계인)
서면통지	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채무당사자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관계인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관계인이란?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족, 친구 등)
② 채무자의 친족 (친인척 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직장동료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채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체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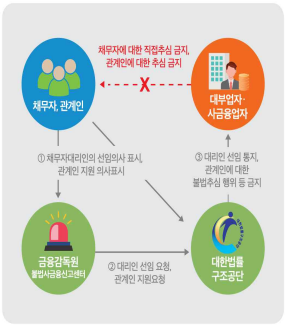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응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지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관계인 지원내용

채무자에 준하여 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 지원

- 채권자에게 보내는 선임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를 명시
-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절차 안내 등 법률사무에 관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신청 방법

전화 신청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온라인 신청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당사자의 대리인 증명 서류 필요)
※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휴대전화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1332→3번) 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제당금, 감정 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

이자율 계산법: 이자율 = 100 × 이자 / 빌려준 돈 (원금)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

담보권 설정 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